

"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."



## 환 경 부



수신 국토교통부장관(생활물류정책팀장)  
(경유)

제목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시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

---

1.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-1904(2023.10.31.)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.
2. 귀 부에서 요청한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### 가. (질의 내용)

1. 대기관리권역법 부칙 제1조 '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' 규정의 적용시기가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의 접수시 인지,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 시 인지?

### 나. (질의에 대한 답변)

1. 「대기관리권역법」 부칙(법률 제17983호, 2021.4.1.) 제3조제3호에 따르면 **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및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**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“**허가 신청 접수 시**”로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2. 이에 따라, '23년 12월 29일 지자체 경유화물자동차 신청서류 도착분까지 택배용 화물자동차('배'번호) 허가를 신속히 완료하고, 관계기관 간 논의한 바와 같이 '23년도 신청건 중 '24년 2.29까지 미완료 건은 취소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. 끝.

환 경 부 장 관



주무관

신병선

행정사무관

김현주

과장

전결 2023. 11. 7.

이경빈

협조자

시행 교통환경과-2989

(2023. 11. 7.)

접수 생활물류정책팀-1939

(2023. 11. 7.)

우 30103

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-3동 환경부 교통환경과

/ <http://me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6931

팩스번호 044-201-6934

/ [sbs@me.go.kr](mailto:sbs@me.go.kr)

/ 대국민 공개